

환경부 공고 제2023-86호

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·관리 등을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를 지정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10일

환경부장관

강원권 및 건강 영향 특성화 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 지정 계획

□ 계획 수립 근거

-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1항*

*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

□ 센터 지정 배경

-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·관리 등을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 중에서 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를 지정 (미세먼지법 제25조의2 제1항)

- 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과 그 밖의 지역 및 국제협력 등 분야에 대해 지정 (「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 지정·운영지침」 등)

- 대기관리권역 4개 권역 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는 既 지정

※ '21년 : 수도권(인하대) 및 중부권(공주대)

'22년 : 남부권(전남환경산업진흥원·목포대) 및 동남권(울산과학연구원)

- '23년 국고 예산(민간경상보조)으로 신규 지정 2개소 국고 지원액 698백만원(개소당 349백만원) 확보

※ 국비 예산액 이상으로 자부담 매칭 필요

□ 신규 지정 센터의 수

- '강원권' 및 '건강 영향 특성화' 각 1개소

□ 대상기관 및 자격요건

- (대상기관) 강원도에 소재하거나 건강 영향 특성화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·단체
 - 국·공립연구기관 또는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 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- 「민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
- (자격요건) 대상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, 다음 요건 중 시설·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세부 기준은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
 -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·관리 등을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(이하 “미세먼지연구업무”라 함)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갖출 것
 - 시료채취, 미세먼지 측정 및 원인물질 분석 등을 위한 시설·장비를 갖출 것
 - 환경공학, 대기환경, 대기과학, 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인력을 갖출 것
 - 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

※ 매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을 자기 부담해야 함

□ 센터 지정 방법

-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를 지정
※ 심사단은 서면심사(80점)와 현장심사(20점)을 종합하여 심사하나, 서면심사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거치지 않고 부적합으로 결정

□ 제출서류, 신청기한 및 접수처

- (제출서류)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「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 지정·운영 지침」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(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책자 형식으로 제본 후 15부 제출)
 -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
 - 미세먼지연구업무에 관한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(「미세먼지 연구·관리센터 지정·운영지침」 별지 제1호 서식)
 -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의 시설·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별도 서식 없음)
 -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의 연구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별도 서식 없음)
 - 미세먼지연구업무에 관한 실적(별도 서식 없음)
 - 재정현황에 관한 서류와 재정확보계획서(별도 서식 없음)
 - ※ 재정현황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
 - ※ 재정확보계획은 국고보조금 이상의 자기부담금(현금 또는 현물)을 확보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명시하고, 신청기관장의 확약서를 첨부해야 함
 - 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(「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 지정·운영지침」 별지 제2호 서식)

- 미세먼지연구업무 공동수행·협력계획서(별도 서식 없음,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업무를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다른 연구기관·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행할 경우 제출)

○ (공고 및 접수기간) 2023년 2월 10일 ~ 3월 2일 18시

※ 접수처 도착 기준으로, 방문 접수와 우편(택배) 접수 모두 가능하나, 우편(택배) 접수는 신청기한 내 도착한 경우만 접수 처리

○ (접수처) (우.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05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(신병선 주무관, ☎ 044-201-6876)

□ **기타사항**

○ 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의 지정 신청·심사 기준 및 절차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첨된 「미세먼지연구·관리 센터 지정·운영지침」에 따름

□ **향후 일정(안)**

○ (2.10~3.2) 지정계획 공고

○ (3월 중) 서면·현장 심사 및 지정

※ 심사 및 지정 일정은 변경 가능

※ 참고 :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

※ 별첨 : 「미세먼지연구·관리센터 지정·운영지침」 끝.

미세먼지연구센터의 시설·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지정 기준(제19조의2 관련)

1. 시설·장비 기준: 다음 각 목의 시설·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. 다만, 환경부장관이 영 제1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중점 업무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·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·장비는 제외한다.

- 가. 실험실, 전산실 또는 사무실
- 나. 대기 배출원 측정장비 1벌 또는 대기질 측정장비 1벌
- 다. 채취 시료 전처리 및 기기분석 장비 1벌
- 라.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장비 1벌

2. 연구인력 기준

- 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출 것

- 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화공 또는 대기관리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2) 환경공학, 환경학, 대기환경, 화학공학, 공업화학, 화학, 환경보건 또는 대기과학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
- 3) 환경공학, 환경학, 대기환경, 화학공학, 공업화학, 화학, 환경보건 또는 대기과학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
- 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출 것

- 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화공, 화학분석 또는 대기환경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2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대기환경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
- 3)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자격(대기환경측정분석 분야에 한정한다)을 취득한 사람
- 4) 환경공학, 환경학, 대기환경, 화학공학, 공업화학, 화학, 환경보건 또는 대기과학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

- 다. 환경공학, 환경학, 대기환경, 화학공학, 공업화학, 화학, 환경보건 또는 대기과학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명 이상을 갖출 것